

의안번호	2217485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6.4.22.
추계번호	26B14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3 신설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항) 1.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2.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 콘텐츠	재량규정
2	안 제25조의4 신설 (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25조의5 신설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제2항) 1.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제공 2. 공공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3.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4.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4	안 제25조의6 신설 (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5조의3 신설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의4 신설 (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3	안 제25조의5 신설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4	안 제25조의6 신설 (비용의 지원)	

2. 상세사유

가.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등(안 제25조의3·안 제25조의4·안 제25조의 6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야간 디지털 경관 사업, 스마트 안내시스템, 정보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등의 디지털 공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하려는 대상 도시공원의 수, 규모 및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범위,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 등도 불확정적이며, 도시공원에 도입되는 디지털 체험 콘텐츠, 스마트 안내 시스템, 디지털 경관 시설 등은 적용되는 기술과 콘텐츠의 구성, 구축 범위와 운영수준에 따라 소요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현시점에 디지털 공원 설치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도시공원을 디지털화하거나 야간개장, 스마트공원 추진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사례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안 제25조의5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기술 제공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디지털 공원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이나 대상 공원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디지털 콘텐츠 실증, 시범사업 운영 등의 재원조달 주체, 방법, 규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민관 협약 체결 여부, 협약 당사자의 역할, 비용 분담 구조, 개별 사업의 규모와 추진 기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디지털 공원 등 유사프로젝트 추진 사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 분	스마트공원 조성 현황
대구 국채보상공원	위험요소를 스스로 학습해 감지하는 인공지능 CCTV, 자동밝기 조절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지는 스마트가로등, 증강현실을 통한 오락적 요소 및 교육적 콘텐츠 제공 등
부산 센텀2지구 스마트공원	쓰레기를 압축하고 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보행자 발걸음을 활용해 전기로 변환시키는 압전타일 등
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광케이블 자가망이 구축된 디지털 둘레길, 냉난방기가 설치된 스마트 안전쉼터, 온열기능·무선 충전기가 설치된 스마트 벤치 등

주: 정보통신신문('25.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참고로 충북 단양군 매화공원은 민·관협력으로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체험형 문화 콘텐츠 공원조성을 계획 중임